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계약목적)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요양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 시설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8조(계약기간)

1.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기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 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입소자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제3조에 의거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규정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정 보호자 1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③ 건강진단서(입소 전 1개월 이내) 또는 의사소견서(검사결과지 첨부)
 - ④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5.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입소자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입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주 계약 보호자의 무단 연락 두절 및 잠적이 확인되었을 경우 1차 조치로 주민등록상의 보호자 찾기 시행 후 부재 시에는 2차 조치로 무연고자 처리하게 된다.

제10조(급여비용/이용료)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와 더

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① 식재료비, 간식비
- ② 간식비
- ③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시설이용은 공단청구 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2%, 또는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비용 청구 시 백원 단위는 절사 가능하다).

5.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직원의 가족 및 지인은 입소 시 본인 일부부담금의 30% 이내로 감면할 수도 있다.).

8.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9.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10.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 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11. 시설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 ②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외출의 경우 시설의 특성상 식재료의 일괄 구매로 인하여 급식이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12. 등급외자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일 90,000원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13. 본 시설의 급여 및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30일 기준). 물가인상에 의한 식재료를 조정한다.

- ① 식사재료비 1식 4,000원, 간식비 1일 2회 3,000원
- ② 시설(입소)급여는 개인 부담율 20%, 또는 경감 8%, 경감 12%이다.

14.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비용(원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5.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6. 퇴소 시 입소보증금은 없으므로 보증금의 반환은 없으나 선입금된 입소비용의 잔여분에 대하여는 일일 계산하여 계약자(보호자)에게 통장으로 환불하여 준다.

17. 이용료 수납 내역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

등급 (1일수가)	일수	구분	본인부담금	식비	간식	4인실 기준
1등급 (93,070원)	30일 기준	일반 (20%)	558,420	4,000X3X30	3,000X30	1,008,420
		감경 12% (40%)	335,052			785,052
		감경 8% (60%)	223,368			673,368

등급 (1일수가)	일수	구분	본인부담금	식비	간식	4인실 기준
2등급 (86,340원)	30일 기준	일반 (20%)	518,040	4,000X3X30	3,000X30	968,040
		감경 12% (40%)	310,824			760,824
		감경 8% (60%)	207,216			657,216

등급 (1일수가)	일수	구분	본인부담금	식비	간식	4인실 기준
3~5등급 (81,540원)	30일 기준	일반 (20%)	489,240	4,000X3X30	3,000X30	939,240
		감경 12% (40%)	293,544			743,544
		감경 8% (60%)	195,696			645,696

(노인요양시설, 2026년 1월 기준)

<비급여 항목 및 비용>

비급여 항목	금 액
식사 재료비(1식 4,000원)	3식 12,000원
간식비(1회 1,500원)	2회 3,000원
이 · 미용비	비급여 또는 무료 자원봉사
1인실: 1일 50,000원	2인실: 1일 25,000원
등외자	96,540원/일 (식사, 간식비 포함, 상급침실료 미포함)

<본인부담금 비율 >

구 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율 60%, 40%
기초수급권자	0%

제11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 부담 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0% 경감, 식대 및 간식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6. 시설급여비용 중 1개월 미만의 경우 일일 급여 산정, 31일의 경우 1일 추가비용으로 급여를 산정한다.

제12조(비용수납)

1. 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선불로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급여 납부 시 현금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2. 입금계좌 시에는 “광주은행 (예금주 : 이경임:헤리티지요양원)”으로 한다.
3.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선불로 10일 이내로 청구되며, 입금 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단, 토, 일요일은 제외).

제13조(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④ 식사 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③ 모든 입소자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⑦ 입소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요양원 내에서 요양원 규칙이나 요양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음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자(보호자)의 결정으로 퇴소를 신청할 때, 다만 적어도 10일의 기간을 갖고 퇴소를 신청한다.
9.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10.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11.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시설에서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3.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4.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